

## 5. 품목별 사용기준

### 과산화수소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)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

(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: 91mg/L 이하(과산화수소로서)

(2) 유가공용 기구등 : 465mg/L 이하(과산화수소로서)

(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 : 1,100mg/L 이하(과산화수소로서)

2) 식품용 용기·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(1)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.

(2) 아래의 잔류량 실험을 실시하여야 하며, 용기·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.5mg/L 이하이어야 한다.

### 잔류량시험

시험용액의 조제 : 식품용 용기·포장을 멸균 처리한 후에는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킨 다음 최종식품을 넣기 전의 용기·포장에 물을 채운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.

시험조작 : 시험용액 20mL을 정확히 취하여 1N 황산 50mL을 넣고 페로인시액 3~5방울을 가하여 때때로 흔들며 섞으면서 0.001N 황산제이세륨용액으로 엷은 홍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다. 따로 같은 방법으로 공시험을 한다.

0.001N 황산제이세륨용액 1mL = 17 $\mu$ g H<sub>2</sub>O<sub>2</sub>

## 시 액

페로인시액 : 황산제일철(7수화물) 0.7g 및 o-페난트롤린염산염(1수화물) 1.76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.

## 과산화초산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)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으로서의 사용한 경우 사용량은

### (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

과산화초산	58mg/L 이하
과산화수소	91mg/L 이하
과산화옥탄산	52mg/L 이하
옥탄산	52mg/L 이하
(1-하이드록시에틸리텐)비스포스포닉산	14mg/L 이하
1-옥탄설폰산나트륨	46mg/L 이하

### (2) 유가공용 기구등

과산화초산	315mg/L 이하
과산화수소	465mg/L 이하
과산화옥탄산	122mg/L 이하
옥탄산	176mg/L 이하
(1-하이드록시에틸리텐)비스포스포닉산	34mg/L 이하
1-옥탄설폰산나트륨	297mg/L 이하

### (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

과산화초산	315mg/L 이하
과산화수소	1,100mg/L 이하
과산화옥탄산	122mg/L 이하
옥탄산	234mg/L 이하
(1-하이드록시에틸리덴)비스포스포닉산	34mg/L 이하
1-옥탄설폰산나트륨	312mg/L 이하

2) 과산화수소 및 초산을 반응하여 얻어지는 것을 식품용 용기·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
- (1) 멸균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시켜 제거하여야 한다.
- (2) 아래의 잔류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, 용기·포장 중의 과산화수소 잔류량은 0.5mg/L이하이어야 한다.

#### 잔류량시험

「과산화수소」의 ‘과산화수소의 사용기준’ 중 잔류량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.

#### 구연산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
- 2) 유가공용 기구등
-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

#### 에탄올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

된다.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
- 2) 유가공용 기구등
-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

### 염화-N-데실-N,N-디메틸-1-데칸아미늄제제

식품의 제조·가공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량은 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)이어야 한다.

### 염화알킬(C<sub>12</sub>-C<sub>18</sub>)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량은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

염화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8</sub> )벤질디메틸암모늄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염화-n-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4</sub> )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(평균분자량 377~384)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염화-n-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8</sub> )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(평균분자량 384)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염화디-n-알킬(C <sub>8</sub> -C <sub>10</sub> )디메틸암모늄(평균분자량 332~361)	15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	550mg/L 이하

- 2) 유가공용 기구등

염화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8</sub> )벤질디메틸암모늄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염화-n-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4</sub> )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(평균분자량 377~384)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염화-n-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8</sub> )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(평균분자량 384)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염화디-n-알킬(C <sub>8</sub> -C <sub>10</sub> )디메틸암모늄(평균분자량 332~361)	15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200mg/L 이하)
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	550mg/L 이하

###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

염화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8</sub> )벤질디메틸암모늄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mg/L 이하)
염화-n-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4</sub> )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(평균분자량 377~384)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mg/L 이하)
염화-n-알킬(C <sub>12</sub> -C <sub>18</sub> )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(평균분자량 384)	20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mg/L 이하)
염화디-n-알킬(C <sub>8</sub> -C <sub>10</sub> )디메틸암모늄(평균분자량 332~361)	24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, 다만,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 시 4급암모늄의 합으로서 400mg/L 이하)
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	550mg/L 이하

## 요오드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사용량은

###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

요오드	25mg/L 이하(적정요오드로서, 다만,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/L 이하)
요오드칼륨	25mg/L 이하(적정요오드로서, 다만,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/L 이하)

## 2) 유가공용 기구등

요오드	25mg/L 이하(적정요오드로서, 다만,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/L 이하)
요오드칼륨	25mg/L 이하(적정요오드로서, 다만,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/L 이하)

##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

요오드	25mg/L 이하(적정요오드로서, 다만,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/L 이하)
요오드칼륨	25mg/L 이하(적정요오드로서, 다만,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으로서 25 mg/L 이하)

## 이산화염소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량은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
- 2) 유가공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
- 3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

##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

된다. 사용량은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: 1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- 2) 유가공용 기구등 : 1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-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 : 1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
### 젖산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
- 2) 유가공용 기구등
-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

###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량은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- 2) 유가공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-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
### 차아염소산수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량은

- 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- 2) 유가공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- 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 : 200mg/L 이하(유효염소로서)

**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**

아래의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·소독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사용량은

**1) 식품 조리·판매용 기구등**

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	550mg/L 이하
염화디-n-알킬(C <sub>8</sub> -C <sub>10</sub> )디메틸암모늄 (평균분자량 332~361)	15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)

**2) 유가공용 기구등**

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	550mg/L 이하
염화디-n-알킬(C <sub>8</sub> -C <sub>10</sub> )디메틸암모늄 (평균분자량 332~361)	15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)

**3) 식품등 제조·가공·소분용 기구등**

폴리(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)하이드로클로라이드	550mg/L 이하
염화디-n-알킬(C <sub>8</sub> -C <sub>10</sub> )디메틸암모늄 (평균분자량 332~361)	240mg/L 이하(4급암모늄으로서)